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7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5일, 문장길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난 2009년,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모든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모든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에 해당하고,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른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업종에 숙박업소가 포함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기타사항 : 없음

3. 이송처

가. 국 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 부 : 환경부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법규 검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이라 함)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등의 사업자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촉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의 규모,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서는 대상사업장별로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에 따라 「자촉법」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를 개정

하여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기 존	개 정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p>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 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u>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u>목욕장업</u></p> <p>5. ~ 8.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 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목욕장업</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2) 검토의견

- 최근 1회용품의 주요 원료인 플라스틱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인 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외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발생원 감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됨에 따라 지난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지난 해 9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숙박업소에 대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반면, 유럽 연합은 2022년부터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¹⁾,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도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²⁾한 바 있음.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목욕장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숙박업소 개소가 목욕장업에 비해 3배³⁾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확산 측면에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관계부처 합동, '19년)

2)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서울시, '18년)

3) '18년말 기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업은 947개소, 숙박업소는 3,083개소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함.

7.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57
----------	------------

제안일자 : 2019. 12. 17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 건의안의 내용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으로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을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와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9년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에서는 면도기, 칫솔 등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 최근의 여론과는 괴리된 풍경을 낳게 되었다.

당시 규제 완화의 취지가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모든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이고, 오히려 1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게 되어 관계 법령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른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모든 숙박업소,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시설 또는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